

보도자료



보도	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	배포	2018.11.6.(화)
----	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

## OL TL	금융위 가계금융과장 박 주 영(02-2100-2510)		윤 영 주 사무관 (02-2100-2511)
책 임 자	금감원 여신감독국장 김 동 궁(02-3145-7550)	담당자	전 광 준 팀장 (02-3145-7435)

제 목 :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

- 금융위·금감원의 전문적인 관리·감독을 받아야 할 대형 대부 업자 범위를 확대(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→ 100억원 초과)
- ◈ 대부업자의 소득 확인 등이 면제되는 대부금액 기준을 강화
 - * 300만원 이하 → 청년(만 29세 이하)과 노령층(만 70세 이상)은 100만원 이하
-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하향 조정(최대 5% → 최대 4%)

1 개요

- □ '18.11.6. 국무회의에서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"대부업법") 시행령」 개정안 통과
 - 대부업체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금전 대부업자 및
 채권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
 -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 하향, 소득·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저신용·취약차주 보호 강화 방안을 담음
 - * 기발표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('17.12.19.) 및 연체·취약 차주 보호 강화 방안('18.1.18.) 후속조치

2 개정안 주요내용

1. 대부업 감독 강화 관련

□ 금융위 등록 대상 확대

- 대부시장에 대한 전문적 감독 확대 필요성을 감안하여 금융위
 등록 대상이 되는 대형 대부업자의 기준을 확대 조정
- (현행)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 → (개정) 100억원 초과
- ※ (참고) ① 대형 대부업자(자산 120억원 이상), ② 채권매입 추심업자, ③ P2P 연계 대부업자 등은 시·도지사가 아닌 금융위원회에 등록 필요

2 대부업 등록시 교육이수 의무 대상자 확대

- 전문화·대형화되는 대부업의 전문성과 법규준수 역량 제고를
 위해 대부업 등록시 교육 대상 임직원 확대
- (현행) 대표이사와 업무총괄사용인 → (개정)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에 한해 임직원 총원의 10% 이상

③ 채권매입 추심업자 재무요건(자기자본요건) 강화

- o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**무분별한 진입·이탈**을 **방지**하기 위해 채권 매입 추심업 등록시 **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상향**
- (현행) 최저 자기자본요건 **3억원** → (개정) **5억원**

4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

-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
- (현행)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→ (개정) 자산규모 10억원 이상
- 채권의 추심·관리·매매 등에 대한 기준, 대출채권 소멸시효 관리
 등에 관한 사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도록 보완

5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신용조회 의무화

- o 전문화·대형화된 대부업체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해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*를 의무화
 - * 신정법상의 신용조회회사(CB사) 또는 신용정보원으로부터의 신용정보조회

6 소득·채무의 확인이 면제되는 대출의 범위 축소

- 상환능력이 취약한 노령층·청년층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의 소득· 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대부금액의 기준*을 강화
- (현행) 전 연령 300만원 이하 → (개정) 청년(만 29세 이하)과 노령충(만 70세 이상)은 100만원 이하

7 대부중개수수료 상한 하향 조정

- 최고금리 인하^{*}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확대 추이^{**}를 반영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하향 조정
 - * 최고금리 인하 추이 : ('13) 39% → ('14) 34.9% → ('16) 27.9% → ('18) 24%
- ** 대부중개수수료 수익(억원) : ('14) 701 → ('15) 1,303 → ('16) 1,511

< 중개수수료 상한 인하 세부내용 >

대부금액 구간	종전	개정
5백만원 이하	5%	4%
5백만원 초과 ~ 1천만원 이하	25만원 + 5백만원 초과금액의 4%	20만원
1천만원 초과	45만원 + 1천만원 초과금액의 3%	+ 5백만 초과금액의 3%

⑧ 대부금융협회 업무 범위 확대

- 이 대부업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협회의 업무범위 확대
- 상품설명강화, 연대보증폐지 등 대부금융협회가 수행할 수 있는 **자율규제 업무**를 **추가**

2) 기타 정비사항

- ① 대부업 등록시 '사회적 신용' 요건 명확화
 - o 금융위 등록요건인 '사회적 신용 요건' 위반의 의미를 신용 정보원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 또는 연체 발생으로 명확화
 - *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타법례 등을 고려하여 문언을 명확히 하는 의미
- ② 연체 가산이자율 관련 규율 구조 정비
 - o 현재 은행권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을 한국은행이 정하도록 규율하던 것을 금융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변경
 - * 현재도 제2금융권 등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 등은 금융위가 규율 중

3 향후 일정

□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「대부업법 시행령」은 '18.11.13. 공포 (관보게재) 후 즉시 시행될 예정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